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65

발의연월일: 2024. 6. 12.

발 의 자:한병도·신영대·이해식

장철민 · 임오경 · 전진숙

진선미 • 윤준병 • 이소영

이성윤 · 박희승 · 윤호중

의원(12인)

제안이유

가정폭력범죄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이고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줄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함.

그러나 현행법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교정 및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는데 목적이 있고, 가정폭력범죄 중 일부에 대하여「형법」상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여전히 일상적이고 가벼운 다툼 혹은 가족 간의 일 정도로 취급되는 측면이 있어가정폭력범죄가 반복되고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므로 가정폭력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처벌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임.

이에 가정폭력범죄 상습범에 대해 가정폭력과 관련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흡한 점을 보완·개선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

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가정폭력 반복의 차단 및 피해자 및 가족 구성원의 인권과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입법목적에서 피해자 및 그 가족구성원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도록 함(안 제1조).
- 나. 피해자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법체계 구현을 위해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3조의3 신설).
- 다.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서 '진행 중'을 삭제해 응급조치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함(안 제5조).
- 라. 반의사불벌죄가 배제되거나 가정폭력범죄의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없도록 함. 또한, 가해자에게 사실상의 면죄부를 주는 조건부기소유예 조항 역시 삭제해 즉각적인 피해자보호를 하도록 함(안 제9조, 안 제9조의2 삭제).
- 마.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해 법정형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로 상향함(안 제63조제1항제1호 신설).
- 바.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해 법정형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로 상향함(안 제63조제2항).

사. 상습적으로 보호처분의 불이행죄를 저지른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해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 (안 제63조제3항).

법률 제 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환경의 조정과 성행"을 "성행"으로,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를 "가정폭력범죄의"로 한다.

제1장에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반의사불벌죄의 배제) 제2조제3호의 가정폭력범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제 283조제3항 및 제3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1. 「형법」 제260조제1항·제2항의 죄
- 2. 「형법」 제283조제1항·제2항 및 제286조의 죄
- 3. 「형법」 제307조 및 제309조의 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를 "가정폭력범죄에"로 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가정폭력범죄에

서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없다.
- 1. 제40조에 따른 보호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 2. 가정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 된 후 1년 이내에 가정폭력범죄 를 범한 경우

제9조의2를 삭제한다.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는"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검사가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이 임시조치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제외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중 "3년"을 "5년"으로,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 제66조제2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반의사불벌죄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정폭력범	제1조(목적)
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	
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u>환경의 조</u>	<u>성행</u>
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u>가정폭력</u>	<u>가정폭력범죄의</u>
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	
<u>을 가꾸며</u> 피해자와 가족구성	
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	
로 한다.	
<u><신 설></u>	제3조의3(반의사불벌죄의 배제)
	제2조제3호의 가정폭력범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
	<u>60조제3항, 제283조제3항 및 제</u>
	3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해
	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u>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u>
	<u>1. 「형법」 제260</u> 조(폭행, 존
	<u>속폭행)제1항·제2항의 죄</u>
	2. 「형법」 제283조(협박, 존
	속협박)제1항·제2항 및 제28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 조치)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 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 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하다.

1. ~ 5. (생 략)

- (생 략)
 - 항을 적용할 수 있다.
 - 1.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가정폭| 력범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취 수 있다. 소된 경우
 - 2.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 는 가정폭력범죄에서 피해자 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 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하였거 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를 철회한 경우

6조(미수범)의 죄

3.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및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의 죄

제5조(가	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
조치)	<u>가정폭력범죄</u>	에	

- 1. ~ 5. (현행과 같음)
- 제9조(가정보호사건의 처리) ① 제9조(가정보호사건의 처리) ① (현행과 같음)
 -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 ②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가정폭력 범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취소 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신 설>

제9조의2(상담조건부 기소유예) 검사는 가정폭력사건을 수사한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

제63조(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폭력행위자는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拘留)에 처한다.

<신 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없다.
- 1. 제40조에 따른 보호처분을 2 회 이상 받은 경우
- 2. 가정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 된 후 1년 이내에 가정

 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삭 제>

제63조(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제63조(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①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제1 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 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

<u>1. · 2.</u> (생 략)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제 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 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 행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 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 ③ 상습적으로 제1항 및 제2항 의 죄를 범한 가정폭력행위자 는 <u>3년</u> 이하의 징역이나 <u>3천만</u> <u>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생 략)

제66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 저는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생략)
-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의2

 제1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

 (검사가 제8조의3제1항에 따

행	위	자
---	---	---

- 2.·3.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의2 제1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검 사가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임 시조치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이 임시조치의 결정을 하 지 아니한 때는 제외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 자는----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3	
<u>5년</u>	<u>5천</u>
만원	
(A) (형해과 가으)	

U (UOTED)
네66조(과태료)

-----.

1. (현행과 같음) <삭 제> 른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아니 하거나 법원이 임시조치의 결 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제외 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 람